



外國의 商品模造防止

美國 · 유럽 國家들 · 日本 · 臺

1. 美國

美國은 知的所有權保護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되어 있어 特許權, 商標權 등 公業소유권과 저작권 뿐만 아니라 各種의 類似工業所有權, 그리고 半導體집에 對한 보호와 함께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거의 완벽하게 보호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美國內에서의 商品模造行爲는 制度的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1) 美國의 商品模造防止制度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美國內에서의 知的所有權의 보호는 各種 關係법령에 의하여 거의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는 바, 商品模造行爲가 타인의 상표권

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고 그것이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는 경우에는 著作權法에 의하여 民·刑事的인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輸入模造商品에 對한 對策

1978年 美國 關稅法의 改正 후 종래 모조상품을 각 항구의 세관에서 적발하면 이를 다시 선적항으로 되돌려 보내던 것을 輸入港의 세관에서 폐기처분하거나 압류하는 등 강경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美國에서 商標權을 가지고 있거나 著作權을 가지고 있는 者가 이를 稅關에 再登錄하면 세관에서는 輸入品檢査時 이를 자동적으로 조사해서 輸入品이 假商品(美國에 登錄된 商標權이나 著作權을 침해하는 商品 또는 原產地등을 허위로 表示한 商品)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어 假商品으로 밝혀지면 즉시 폐기처분하거나 압류토록 하여 模造商品이 美國으로 輸入되는 것을 막고 있다.

한편 美國內의 우체국(특히 國際우편물 접수국)에서도 外國으로부터 부쳐오는 소포우편

물을 검사하여 商業的 價値가 있는 模造商品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 또는 압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美國內의 稅關과 우체국에서 주한미군들이 미국 내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보내는 국제소포를 調查하여 多數의 假商品을 적발, 폐기처분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美國은 밖으로 부터 假商品이 美國內로 流入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부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模造品 生産國에의 調查團 파견

美國은 商務省의 關係관과 IACC 등 민간기구의 要員들을 단독 또는 합동으로 模造品生産國으로 지목된 國家에 파견하여 模造品の 生産과 流通現況을 조사하여 이를 對外通商政策에 반영하고 있다.

4) 模造品 生産國에 對한 對應措置

모조품생산국으로 지목되고 특히 模造品을 美國에 輸出한 협의가 있는 國家를 상대로 通商壓力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상 압력으로는 일반특혜관

制度和 그 活動

灣의 制度和 活動중심

세 (GSP)수혜범위의 축소 또는 폐지, 잦은 덤핑 提訴, 쿼터制 實施, 水産物의 어획쿼터 축소 및 各種의 무역장벽을 설치하여 간접적으로 模造品の 生産 및 流通을 막도록 영향력을 行使하고 있다.

2. 유럽 國家들

대부분의 유럽 國家들도 美國과 마찬가지로 各種의 知的所有權 保護制度를 잘 갖추어 놓고 있다.

類似工業所有權制度가 美國처럼 잘 발달되어 있기는 해도 半導體칩의 保護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保護制度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에 있다.

模造商品은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하여 商標權侵害 또는 저작권침해등으로 비교적 엄하게 다스려지고 있다.

3. 日本

日本은 知的所有權制度에 관한 한 세계의 最先進國에 속하나 아직까지도 國內에서 商品 模造行爲가 빈번히 發生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이나 일부 품목은 문제가 아주 심각할 정도이다.

日本의 模造商品中 가장 심각한 것은 프랑스나 이태리 등 西歐의 유명브랜드를 모방, 도용한 가방 등 피혁제품이나 악제사리類 그리고 各種 의류 등이다.

日本은 外部로부터의 輸入品에 對한 模造商品 적발과 함께 國內의 상품모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4. 臺灣

臺灣은 홍콩과 함께 상품모조행위가 극심한 국가로 지목을 받고 있어서 상표권을 포함한 各種 工業所有權의 침해에 대한 罰則을 강화하고 著作權과 類似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 臺灣은 오래前부터 商品 模造行爲가 극심했으며 이에 따라 일찍부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模造行爲에 대처해 오고 있었다.

臺灣의 工業所有權法 및 著作權法 등 各種의 罰則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엄격한 편이며 商品 模造를 규제할 各種 장치들 미러부터 준비해 두고 있어서 交易相對國의 各種 대응조치에 그때마다 이를 이

용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무역마찰을 교묘히 피해 나가고 있다.

臺灣은 정부 내외 정부 외의 민간경제기구내에 各種 商品 模造防止協會 등을 설립하여 模造品에 대한 규제와 各種 弘報 活動을 통하여 模造品 근절운동을 벌이고 있다.

臺灣정부 내의 模造防止機構와 民間團體내의 模造防止機構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Anti-Counterfeiting Committe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臺灣의 經濟部내에 模造防止委員會를 설치하여 商品 模造防止 活動을 전개하고 있으며 同委員會의 關長 아래 “模造商標 및 原產地 虛偽表示 防止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일개기 관으로서 行政權限을 갖고 있으며 특히 관련 법규의 제정과 改正에 깊숙히 關여하면서 模造商品의 出現을 막는 政策立案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2) 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mmittee

臺灣 全國工業總會내에 설치된 全國反仿冒委員會로서 1984年 3月 12日에 설립되었다. 이는 工業所有權의 효과적인 保護를 위하여 1981年 2月에 중화민국 전국공업총회에서 다수의 수출업자를 招致하여 Anti-Counterfeiting Selfdisciplined Conduct Act에 서명을 받도록 한 것을 시발로 하여 民間次元에서 商品 模造防止 活動을 시작

하게된 것이 계기가 되어 模造防止特別팀을 구성하여 活動하도록까지 발전되었다.

상기한 模造防止特別팀을 모체로 하여 臺灣全國工業總會(The Chinese National Federation of Industries)와 臺灣商工會議所(Th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Republic of China : 臺灣全國商業總會)가 합동으로 全國反仿冒委員會(전국 상표모조방지 위원회)를 설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委員會는 전국공업총회와 전국상업총회의 산하단체에서 선출된 委員들로서 委員會(National-Anti Counterfeiting Committee)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전국공업총회와 전국상업총회의 共同산하에 두도록하

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召集人(Chairman)과 副召集人(Deputy Chairman), 法律顧問(Advisors of Law), 執行秘書(Executive Secretary), 辦事員(Clerks) 및 專員(Specialists) 등을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공업 및 상업상의 권리보호를 함에 있어서 정부의 政策決定에 협조하고 業界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工業所有權의 使用秩序를 바로 잡는 것을 設立趣旨로 하고 있다.

한편 同委員會는 상품모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任務를 수행하고 있다.

(1) 模造防止政策을 수행함에 있어서 政策當局에 협력하는 일

(2) 工業所有權保護의 취지를 널리 弘報하는 일

(3)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에게 商去來倫理를 촉구, 격려하는 일

(4) 美國 또는 國際的인 模造防止機構들과 협력하는 일

(5) 弘報用的 商品模造에 관한 國內外的 各種 情報를 수집하는 일

(6) 제조업체간의 商品模造紛爭을 해결하는 일

(7) 외국업체로부터 부당한 告發등을 접수할 경우, 關聯資料를 정밀조사하여 이를 반박, 해명하는 일

(8) 제조업자 및 무역업자에게 獨創的인 商品開發을 촉구하고, 固有商標 및 브랜드를 選定, 使用하도록 유도하는 일. <㉞>

(案) 特許廳 複寫業務 代行 (內)

本會에서는 對民서서비스業務를 擴大하여 會員을 비롯한 資料利用者에 對한 便宜를 提供하고 效率的인 業務遂行을 하고자 1986年 3月 3日부터 特許廳 閱覽室의 特許文獻 複寫業務를 代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同 複寫手數料 徵收方法을 아래와 같이 變更 實施하오니 業務에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施行日字 : 1986年 3月 3日

◎ 手數料徵收方法 : 現金收納(수입인지는 받지 않습니다)

◎ 金 額 : 枚當 100원(從前과 同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研修部 (557-1077~8)로 문의바랍니다

零細發明家를 돕습니다

大韓辨理士會에서는 국민자가 發明·考案을 하여 이를 出願하고자 할 때 當회소속 辨理士가 무보수로 受任하여 모든 節次를 수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자 發明家 여러분께서는 大韓辨理士會를 많이 利用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① 邑·面·洞長이 發行하는 영세생활보호대상자 증명 2통

② 發明 考案의 要旨說明書 2통(도면 포함)

※ 자세한 사항은 大韓辨理士會(567-3068·568-8517)로 問議바랍니다